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6 일

여 수 시 장 2024/12/6



여수시 조례 제2148호

붙임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를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을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받은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각종 행사에 의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되는 명칭 등을 말하여,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법인·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승인 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본
4. 기관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검토기준 및 승인)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6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의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 여부
3. 행사 내용의 충실성 여부(단순 공연, 기관 또는 개인 홍보, 정치적 목적 등)
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승인취소) ① 의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받은 기관, 법인·단체가 허위·과장 홍보 및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

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앞서 신청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결과제출)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내용, 행사 세부내용을 포함한 행사결과
2.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인에 대하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여수시의회 포상 조례</u>	<u>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행하는 <u>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포상과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기준과 절차</u> -----.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u>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u>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u>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생략)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u>별지 제5호 서식</u>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u>별지 제5호서식</u> -----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⑧ (생략)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설></u>	⑨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u><신 설></u>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받은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제16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각종 행사에 의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되는

	<u>명칭 등을 말하여, 이하 “후원명칭” 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u> <u>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u> <u>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법인·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u> <u>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u> <u>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u> <u>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u>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u> <u>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7조(사용승인 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다음</u>

	<u>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u>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u> <u>2. 행사계획서</u> <u>3. 기관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본</u> <u>4. 기관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u> <u>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u> <u>②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8조(검토기준 및 승인)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u> <u>1. 제16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u> <u>2. 행사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의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 여부</u> <u>3. 행사 내용의 충실성 여부(단순 공연, 기관 또는 개인 홍보, 정치적 목적 등)</u> <u>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u>

	<u>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u> <u>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u> <u>③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u> <u>④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u>
<u><신 설></u>	<u>제19조(승인취소) ① 의장은 행사 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 받은 기관, 법인·단체가 허위·과장 홍보 및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u> <u>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앞서 신청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신 설>

제20조(결과제출)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내용, 행사 세부내용을 포함한 행사결과

2.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인에 대하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